

FTA 체제하의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 및 경쟁력 강화을 위한 전략 : 선진국의 주류산업 정책과 제도를 중심으로

Strategies for Consumption Promotion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and Competitive Reinforcement under FTA System : Focused on Policy and System of Alcohol Beverage Industry in Industrial Nations

정 철 · 강순아*

Chul Cheong, Soon Ah, Kang*

서울벤처정보대학교 발효식품과학과

Department of Fermented Food Science, Seoul University of Venture & Information, Seoul

I. 서 론

2007년 국내 산업은 제3의 개국이라 일컬어지는 미국과의 FTA를 체결함으로서 세계자유무역체제로 본격 돌입하게 되었고 향후 중국 및 EU 국가들과의 FTA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무한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특히 국내 농업은 점차 경쟁력 상실이 우려되며 농산물의 가격폭락으로 인해 농촌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이고 장기적으로는 국내 농산물이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국내 농촌산업도 국가의 일방적인 보호와 보상에만 기댈것이 아니라 국내 농산물의 가공화 및 특성화를 통해 외국 농산물과의 차별화를 부각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 농업분야가 세계자유무역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범국민적으로 지혜를 모

은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국내 농업분야의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FTA 시대를 맞아 국내 농산물 소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처방안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한 방편으로서 주류산업육성을 통한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을 유도하는 것이다. 국내 주류시장은 2005년 출고가 기준 6조5천억원(수입주류제외)이 넘는 규모로 식음료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며 주류의 제조, 유통, 수입 및 소비하는 과정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주류 소비량 역시 2005년 기준 일인당 맥주 100병, 소주 82병으로 많은 양의 주류가 소비되고 있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선진국의 경우 특히 주류소비가 자국의 농산물소비로 이어지도록 주류산업정책을 구축한 반면 국내 주류산업은 우리 농업과의 연계가 미비하다. 본 논문에서는 FTA체제하에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과 경쟁력강

*Corresponding author: Soon Ah Kang

Department of Fermented Food Science, Seoul University of Venture & Information, 1603-54 Seocho-dong, Seocho-gu, Seoul 137-070, Korea

Tel: +82-2-3470-5270

Fax: +82-2-523-6767

E-mail: sakang@suv.ac.kr

회를 위해 주류산업육성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선진국의 주류산업정책과 제도의 시사점 분석을 통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II. 선진국의 주류제도

가. 주류산업 관리체계

선진국 주류산업의 육성 및 관리체계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주류산업을 자국의 농산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고부가가치의 전략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알코올 남용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주류산업관련 적절한 통제와 규제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같이 재정경제부산하 국세청에서 주류산업을 전반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있으나 독일의 경우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류산업은 연방재정경제부와 연방식량농림부로 이원화되어 관리, 통제되고 있다. 포도주관련 주류관리 및 통제권은 연방식량농림부에서 직접관할하며, 그 외 주류관리는 연방재정경제부산하 연방관세청과 연방전매청에서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류산업은 연방재무성산하 알코올 담배화 기국에서 일괄하여 관리, 통제하며 주중분류도 비교적 단순한 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선진국들의 주류 관리시스템은 각국의 주류산업환경, 즉 경제적, 산업적 또는 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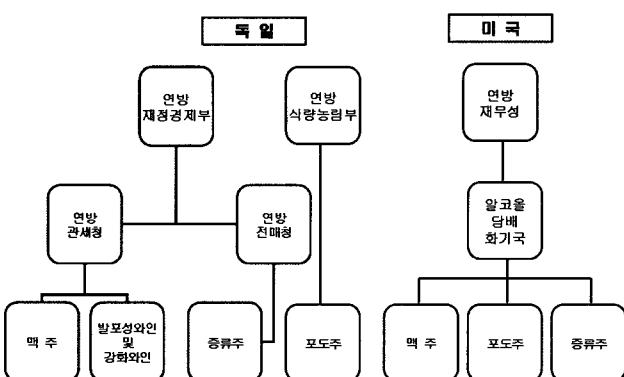


그림 1. 독일 및 미국의 주류관리 체계.

나. 주류 제조면허제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과 독일의 경우 과세상 의심이 가지 않는 한 면허를 발부하나 증류주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전 차원에서 면허조건을 다른 주류에 비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소규모 증류장에서 년간 생산량이 10hl이하 일때 또는 자가 증류장을 보유하지 못한 원료소유농민의 경우 년간 생산량이 50 Liter이하일 경우 증류권없이 타인의 증류장에서 증류주를 생산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포도주의 경우 포도재배권리를 가진 농가는 자동적으로 포도주를 제조 및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여 농산물소비 촉진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일

표 1. 주류면허 제도

국명	특징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류관련 범죄행위가 없고 과세상 의심이 가지 않는 자에 한하여 연방 재무성 소속의 각 지방 담당국장이 연방주류 관리법에 따라 면허를 부여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상 성설성이 의심이 가지 않는 자에 한하여 맥주는 연방관세청, 와인은 연방식량농림부, 증류주는 연방전매 행정처에서 면허부여 증류권이 없는 소규모증류장의 경우 년간 생산 증류주 생산량이 10hl이하 일때 증류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자가 증류장을 소유하지 못한 원료소유농민의 경우 타인의 증류장에서 증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도 증류권 인정 (년간 50 Liter 이하) 포도주용 포도재배권리를 가진 농가는 자동적으로 포도주를 제조 및 유통할 수 있음 하급포도주가 재배지역에서 수확된 포도만으로 포도주를 제조했을 때 지역토산 포도주라는 명칭을 얻음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류의 종류별, 품목별로 제조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이 면허 부여 주류의 제조면허는 하나의 제조장에서 면허를 받은후 1년간의 주류 제조예상 수량이 미달일 경우 받을 수 없음 (청주, 소주갑류, 맥주등은 60 kl, 과실주류, 위스키류 등은 6 k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와 소비세 담당 공무원에 신청 후 관세와 소비세의 감독위원회에서 면허 부여 맥주의 경우 사업용 제조면허와 제한면허로 구분

본의 경우도 2005년 주세법 개정을 통해 년간 최저예상 제조 수량의 기준을 변경하고 전반적으로 주류관련 규정들을 단순화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감독위원회가 정부로부터 주류관련 전반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중립적인 입장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 주류 제조시설기준

주류제조시설에 관하여서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류주의 경우에만 시설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발효주에 관하여서는 별도의 제조시설에 관한 기준설정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맥주설비는 맥주제조와 곡물음료 생산에도 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맥주양조장 시설 내에서 맥주뿐 아니라 다른 주류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가함으로서 유연한 유통체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포도주 관련 철저한 위생적 관리를 위해 위해요소 중점관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표 2. 주류제조시설기준

국명	특징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와인의 경우 지역국장은 세입을 보호할 목적으로 계량기, 탱크, 수송관 및 기타 기기를 설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중류주의 경우 제조장의 물리적 보안장치에 대한 설명과 신고를 의무화 맥주의 경우 맥주양조장 시설에서의 선술집 운영이 세입에 지장을 주지 않고 법률의 특정 조항에 반하지 않는다면, 양조장 시설 대체 사용 가능(곡물음료 생산 가능) 선술집에서는 납세된 와인이나 중류주도 판매가능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주류제조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이 없음 주정제조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조시설 기준을 설정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도주제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임(관세청에 신고) 포도주제조도 식품산업의 하나로 위생적 관리를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또는 국제품질인증(ISO2000) 등을 요구하고 있음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효주 제조시설은 신고사항이며 중류주의 경우 허가사항임 제조공장과 공정을 사전에 감독위원회로부터 승인 받아야 함

라. 주류제조방법 및 규격기준

선진국의 주류제조방법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표 3a~3c에서 보는 바와같이 일본의 경우 2005년 주세법 일부 개정을 통해 청주는 알코올분이 22도 이상의 것을 제외하며 주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를 각 주류별로 지정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맥주는 순수령에 따라 4가지 원료이외의 것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식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맥주제조에 필요 한 기본적인 원료만을 사용하여 다양한 고품질의 맥주생산이 가능하다는 증거이며 불필요한 원료사용에 따른 국민건강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국가의 의지이다. 또한 세계최초의 식품위생법이라 할 수 있는 맥주순수령을 통해 독일 맥주의 정통성과 우수성을 홍보하는 마케팅 효과도 거두고 있다. 국내 농민민속주 경우 기술개발을 통한 주질향상을 등안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농산물을첨가하여 기능성만을 홍보, 판매하려는 하급전략은 독일의 맥주순수령 사례를 통해 국내 농민민속주업계가 반성해야 할 점이다.

포도주의 경우 독일 연방식량농림부는 연방보건부와 함께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포도가공물의 특성을 살리기위해 취급방법이나 첨가재료에 제약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포도주 품질증진과 원료사용 출처를 구분하기위해 지리적표시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도 포도주, 브랜디, 발포성포도주 등이 특정상표명을 사용하기위해 해당지역 내에서만 생산되어야하는 규정을 두어 제품의 특성화 및 세계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미국의 경우 발효주보다는 중류주제조 제조방법과 규격을 세분화하여 엄격히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제공 및 원산지표시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류에 대한 품질인증제나 원산지표시제등이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FTA체제하에서는 국내 농산물로 제조된 주류가 외국 농산물로 제조된 주류로부터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러한 품질인증제나 원산지표시제도 도입은 제품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제품의 국내외적인 경쟁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전반적으로 선진국들은 주류면허나 시설관련 규정들은 유연하고 완화된 정책을 펴 일반인들의 주류산업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주류제조에 관해서는 원료부터 가공 처리하는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 통제함으로서 국민건

표 3a. 주류제조방법 및 규격기준(일본)

구주세법		신주세법	정의 및 개정내용
종 류	품 목	품 목	
청 주		청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코올분이 22도 이상의 것을 제외 쌀, 쌀국, 물 및 청주박 이외의 물품중량의 합계가 쌀(쌀국포함)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을 제외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서 “보리, 조, 옥수수, 고량, 수수, 괴 혹은 전분 또는 이들 국”을 제외
합성청주		합성청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코올분이 16도 미만, 엑스분이 5도 이상으로 산도가 일정 이상의 것” 이외를 제외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에서 “보리, 조, 옥수수, 고량, 수수, 괴 혹은 전분 또는 이들 국”을 제외
소 주	소주갑류	연 속 식 증류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칭을 변경
	소주을류	단 식 증류소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칭을 변경 원료마다의 규정을 명칭화
미 림	미 림	미 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코올분이 15도미만, 엑스분이 40도 이상으로 원료포도당 등의 중량이 일정이하의 것” 이외를 제외
맥 주	맥 주	맥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코올분이 20도 이상의 것을 제외
과실주류	과 실 주	과 실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실 또는 과실 및 물을 원료로 빌효시킨 것에 대해서는 알코올분이 20도 이상의 것을 제외 주류의 원료로 된 과실에 함유하는 당류의 중량을 초과하여 당류를 가하는 것을 제외 주류의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당류를 가한 것을 제외
	감 미 과 실 주	감 미 과 실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실주로 되지 않는 것과 과실주로 된 주류의 일부를 추가
위스키류	위 스 키	위 스 키	
	브 랜 디	브 랜 디	
스 피 릿 츠 류	스피릿츠	스피릿츠	
	원료용 알콜	원료용알콜	
리 큐 르	리 큐 르	리 큐 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칭을 변경
발 포 주	발 포 주	발 포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코올분이 20도 이상의 것을 제외
	분 말 주	분 말 주	
잡 주	기타잡주	기타양조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전 주세법 규정에 의한 잡주(기타잡주)의 일부주류에 대해 품목을 신설 “알코올분이 20도미만, 엑스분 2도이상의 것” 이외의 것을 제외 알코올 이외의 주류를 원료의 일부로 한 것을 제외 알코올을 원료의 일부로 한 것으로 알코올분 15도 이상의 것 또는 알코올의 중량이 물 이외의 원료의 100분의 30이상의 것을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상의 주류의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것(신설)

표 3b. 주류제조방법 및 규격기준(독일)

국명	특징
맥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법에 따라 4가지원료 (물, 맥아, 호프, 효모)만을 사용할것을 규정(주세규정과는 무관)
포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도를 재배하는 경작방법과 관련, 생산지역, 품종, 포도주의 유형, 지리적 표시제 해당유무 등에 따라 엄격히 통제됨 주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품질고양, 시장화 개선 및 고급포도주의 재배지 특성보존을 위해 토지경작능력의 전제조건들을 확정할수 있음 연방식량동립부는 연방보건부와 함께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포도가공물의 특성을 살리기위해 취급방법이나 첨가재료에 제약을 둘수있음
발포성 포도주 및 강화 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포성 포도주 및 강화와인에 대한 별도의 제조방법 규정 없음 발포성 포도주는 알콜분이 1.2% vol~15% vol, 병내 압력이 3bar이상으로 규정 강화와인의 경우는 알콜분이 1.2~22% vol
증류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재료는 독일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 당분을 포함한 과실, 곡류 및 알코올 음료 (맥주, 와인등)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능 연방전매청은 제조사의 년간 생산량, 조건 및 원료사용 등을 규정 농업증류장에서는 감자와 곡류만을 이용하여 증류주를 제조하며 증류 후 발생되는 찌거기는 증류장 농가에서 키우는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도록 규정 과일증류장에서는 과실, 맥즙, 뿌리, 와인만을 이용하여 증류주를 제조도록 규정 알코올함량이 22%vol 이상으로 규정

강위생측면을 우선시하고 더불어 자국의 농산물을 이용한 고품질의 주류생산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마. 주종별 주세

현재 국내 주세는 종가세 (주정은 종량세)로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는 반면 선진국 대부분은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또한 고도주에는 고세율, 저도주

표 3c. 주류제조방법 및 규격기준(미국)

국명	특징
포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도, 과일 또는 다른 농산물로부터 생산된 알코올 24%이하의 모든 종류의 생산품으로 정의 천연와인, 특수천연와인, 농산물와인, 표준와인 이외의 것으로 구분 각 와인별 제조방법을 규정하며 천연와인 이외의 와인에 대해서는 배합공식 및 공정에 대한 자료 제출후 생산가능 농산물와인에는 과일쥬스 이외의 농산물(벌꿀)을 이용하되 가미 또는 착색을 해서는 안됨 원산지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75%가 그 이름에 의해 표시된 장소 혹은 지역에서 자란과일 혹은 농산물로 부터 얻어진 것
발포성 포도주 및 강화 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포성 포도주 및 인공탄산포도주로 구분되며 마감용 향미료 첨가 가능 사용된 과일 시럽, 와인 스피리트 및 와인은 발포성 와인이나 인공 탄산 와인의 원료 와인과 동일한 과일로 만들어야 함
증류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류주를 총 12가지 유형으로 분류 관리하며 각 유형별 제조방법과 규격을 상세히 규정 원료나 물질의 취급, 숙성 또는 발효, 증류, 정화 및 정류 절차 및 제품 계량 측정까지 단계별 설명을 기술하도록 규정 배합공식은 화주의 특성, 합성, 등급 및 유형을 변화시키는 증류주의 공정에서 필요로 하며 생산 전 승인 받도록 규정 장기간 보관을 위한 증류주의 혼합 또는 배합에 대한 규격 설정

에는 저세율을 적용함으로서 고도주소비를 줄이고 저도주 소비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펴고있다. 실례로 독일의 경우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종량세를 적용하고 저도주인 맥주에는 낮은 주세를 부과하며, 강화와인 및 증류주인 경우에는 높은 주세를 부과하는 것을 알수 있다. 특히 독일 농가의 소득보전 및 농산물소비차원에서 포도주의 경우 면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년간 생산량에 따라 각 주종별로 차등과세를 적용함으로서 영세생산자를 보호하고 시장에

표 4. 주종별 주세

주종	내용																									
맥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아로부터 생산된 맥주 및 음료와 맥주를 브랜딩한 강화맥주에 대해 과세 • 1 Plato 당 0.79 EUR/hl이며 이때 알코올함량은 고려하지 않음 (12 Plato=9.48 EUR/hl) • 알코올함량이 0.5%vol 이하일때는 면세 • 년간 생산량이 200,000hl이하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감세 혜택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 세율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알코올함량</th> <th>세금/hl</th> <th>세금/0.75L 병</th> </tr> </thead> <tbody> <tr> <td>발포성포도주</td> <td>6% vol 부터</td> <td>136.00 EUR</td> <td>1.02 EUR</td> </tr> <tr> <td>발포성포도주</td> <td>6% vol 이하</td> <td>51.00 EUR</td> <td>0.38 EUR</td> </tr> <tr> <td>강화와인</td> <td>15% vol 이상</td> <td>153.00 EUR</td> <td>1.15 EUR</td> </tr> <tr> <td>강화와인</td> <td>15% vol 까지</td> <td>102.00 EUR</td> <td>0.76 EUR</td> </tr> <tr> <td>강화와인*</td> <td>15% vol 까지</td> <td>136.00 EUR</td> <td>1.02 EUR</td> </tr> </tbody> </table>			구 분	알코올함량	세금/hl	세금/0.75L 병	발포성포도주	6% vol 부터	136.00 EUR	1.02 EUR	발포성포도주	6% vol 이하	51.00 EUR	0.38 EUR	강화와인	15% vol 이상	153.00 EUR	1.15 EUR	강화와인	15% vol 까지	102.00 EUR	0.76 EUR	강화와인*	15% vol 까지	136.00 EUR
구 분	알코올함량	세금/hl	세금/0.75L 병																							
발포성포도주	6% vol 부터	136.00 EUR	1.02 EUR																							
발포성포도주	6% vol 이하	51.00 EUR	0.38 EUR																							
강화와인	15% vol 이상	153.00 EUR	1.15 EUR																							
강화와인	15% vol 까지	102.00 EUR	0.76 EUR																							
강화와인*	15% vol 까지	136.00 EUR	1.02 EUR																							
<p>*알코올함량이 15%vol이면서 병내 압력이 3bar를 가진 강화와인</p>																										
증류주 및 포도주 및 강화 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03 EUR/hl 순수 알코올 • 연방전매청은 증류주에 관한 판매유통 독점권을 행사하며 전매증류장, 자가증류장(1,200개), 변제 • 증류장(30,000개), 원료소유농민(200,000개)으로부터 생산된 초기 증류주를 고품질의 증류주로 가공하여 식품, 증류주업계, 의약품 및 화장품 업계에 독점공급 • 변제증류장과 원료소유농민의 경우 정해진 증류권한도 내에서 생산된 증류주일 경우 1,022 EUR/hl 순수알코올 과세 • 자가증류장의 경우 년간 생산량이 4hl 순수 알코올일 경우 730 EUR/hl 순수 알코올 과세 																									

서 가격경쟁력을 갖도록 합리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III. 선진국의 주류산업 육성 및 농산물 소비정책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주류산업 육성과 자국의 농산물소비 촉진을 위해 기본적으로 주류산업정책을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육성발전과 적절한 통제를 통해 주류시

장을 관리하고 있다.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고도주에는 고세율, 저도주에는 저세율을 적용하여 전반적으로 저도주소비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특히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나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차등과세나 면세를 적용함으로서 소규모 영세업체의 경쟁력을 유지시켜 자국의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주류면허 및 제조시설 등에 관한 규정들을 완화함으로서 주류산업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반면 주류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와 제조방법에 관한 규정들은 국민건강보호차원에서 엄격히 통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맥주 년간 생산량 40,000hl이하를 생산하는 영세업체의 경우 기본세율에서 또다시 차등과세를 적용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년간 생산량이 소규모일 경우 1,000 hl당 세금을 40,000hl일 경우 맥주 주세의 85%, 20,000hl일 경우 맥주주세의 78.4%, 10,000hl일 경우 맥주주세의 67.2%, 5,000hl일 경우 맥주주세의 56.0% 부과하고 있다.

또한 표 5a~5f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류산업육성과 농산물소비를 위해 독일은 포도주의 유통증진을 위해 포도주 기금을 조성하여 포도주의 품질을 증진하고, 시장개발과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자국의 농산물소비촉진 및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증류주의 경우 전매제를 시행하고 있다. 본래 전매제는 1차 세계대전 당시 공업용 알코올이 다량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독점권을 갖고 전매제를 실시하였으나 현재의 전매제 실시는 중소 증류주업체 및 농민들에게 원가이상의 가격을 보상해줌으로서 안정된 농가소득 창출 및 농산물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전매제시행에 따른 연방전매청의 차액손실은 연방예산 보조금으로 보전 (100 Mio.EUR, 2005년 기준)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포도주 산업의 관리 및 통제는 독립기관이면서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국립원산지명칭기구, 포도주사업자간 국가사무소, 생산자협회 등이 수행하여 가급적 국가가 직접 개입을 피하고 공공기능을 가진 협회 등에 행정권을 부여 관리 및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주류산업육성을 위해 교육과 연구에도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왔으며 오늘날 선진 각국의 명주탄생은 단순한 경험이 아닌 과학적방법에 근거한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것임을 알아야한다. 독일 맥주, 프랑스 와인, 영국의 위스키, 일본의 청주발달에는 각국의 유수 대학기관들의 연구업적

표 5a. 정책 및 제도적 측면 (독일)

주종	내용
포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도주 산업 육성차원에서 포도주에 대한 0세율 적용 포도주의 품질을 증진하고, 시장개발과 시장보호를 통해 포도주의 유통 증진을 위한 공법상의 기관인 “독일포도주 기금(Deutscher Weinfonds)”조성 연방식량농립부로부터 임명된 운영위원회가 (44명으로 구성) 권한을 위임 받아 임무수행 포도주 기금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세를 납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포도주 소유자나 이용권한자는 포도밭 면적 (100m²) 당 년간 0.6647 € (단, 포도밭이 500m² 이상일 때) ② 포도즙, 포도액이나 포도주를 영업을 위해 인수한 자는 0.6647 € /100 Liter 각 지역의 판매증진기구와 독일 포도주 기금은 계획된 판매 증진책에 대해 상호정보교환 및 정책을 조정 판매증진기구와 독일 포도주 기금이 공포한 공동의 업무규정에 따라 연방 식량 농립부의 인기에 따라 세부사항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매제 시행을 통해 중소 중류주업체 및 농민들에게 원가이상의 가격을 보상해줌으로서 안정된 농가소득 창출 및 농산물 소비 촉진효과 국내에서 생산된 원료농산물(감자, 과일등)을 생산하는 농정주에게만 제조 면허를 부여함으로서 국내농산물 소비촉진 수입 중류주에 대한 독점권도 연방전매청이 행사함으로서 중류주 전체시장의 안정화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류권 한도 내에서 생산된 중류주에 대해 연간 생산량이 300hl 이상이 아닌 경우 원가기준 보조가산금책정 연방전매청의 차액손실은 연방예산 보조금으로 보전 (100 Mio.EUR, 2005년기준) 중류장시설이 없는 원료소유농민은 병제중류장 시설을 이용하여 년간 50L까지 중류 허용

과 주류관련분야의 인력양성이 명주탄생에 크게 기여했음은 연구와 인력양성에 소홀한 국내주류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류소비량은 세계적수준이면서 주류관련 연구와 교육기관이 전무한 부끄러운 국내 현실에서 향후 국내 주류시장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는 주류관련 연

표 5b. 교육 및 연구 측면 (독일)

주종	기관	특징
맥주	Berlin 공대 맥주공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제 전문학사 과정개설 - 미국, 카나다, 일본, 남미등지에서 온 학생들 수학 2년제 brew master과정 및 석박사과정 개설(독일인 위주강의) 유럽, 아시아 및 남미국가들과 산학협동 활발히 진행 세계최대 주류관련 효모은행 보유
	Munich 공대 맥주공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년제 brew master과정 개설 - 독일인 및 외국학생들 수학 석박사과정 개설 (독일인 위주강의) 맥주공학과를 세계최초로 개설 및 캠퍼스 내 맥주공장 운영
	Doemens 맥주기술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인 및 외국인대상 양조교육실시 중국에 분원을 설립 활발한 양조교육 활동 국내 오비맥주와 하이트맥주 직원 교육받음
포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72년에 설립된 독일 최대 포도주연구소
발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와인협회, 독일과학재단 및 독일연방농립부와 공동 연구
포도주 및 강화 와인	Geisenheim 국책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스바덴대학과 긴밀한 산하협동체제 구축, 석박사과정 개설 독일 포도주 산업 및 포도양조학 발전에 지대한 영향 끼침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와 연구협약체결
증류주	Hohenheim 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류주관련 석박사과정 개설 지자체 및 협회와의 협동 연구체제 구축

구와 인력양성이 결정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와인산업의 후발주자인 미국의 경우 와인 선두주자인 프랑스, 이탈리아등 유럽의 와인종주국들을 물리치고 오늘날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고품질의 와인생산을 가능케한데는 UC Davis 대학의 연구업적이 지대한 공헌을 한 결과였다. 선진국들의 또 다른 특징은 대학기관, 협회, 산업계간의 공동연구를 활발히 진행하며 기초연구와 더불어 산업계와 협회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며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정보교환을 위해 각 주류별 학회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한다는 점이다. 또한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 와인과 위스키산업을 국가 주요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표 5c. 교육 및 연구 측면 (미국, 일본, 영국)

국명	기관	특징
미국	UC Davis [포도 양조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사·석사·박사과정 개설 -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통한 자격증제도 시행 - 전세계 와인관련 대학 및 산업체들과 연구 활발히 진행 - 캘리포니아지역 와인밸리에 지대한 영향 - 최근 연구결과를 워크샵이나 학술발표를 통해 공개
	Cornell 대학 [양조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욕 와이너리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연구정보 및 품질관리 수행 - 포도 및 와인에 대한 광범위한 data base 확보 및 보급 - 세미나 등을 통한 산학협동 수행
일본	NRIB [주류총합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행정법인으로서 주류원료분야·공정분야·미생물분야·효소 공학 분야 등으로 구성 - 주류 분석·감정·주류 품질평가·주류에 관한 연구 및 조사 품평회 개최
	기타 주요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수산성산하 독립행정법인인 식품총합연구소 - 전국 42개현은 지자체별 자체 주류연구소 보유, 주류관련연구 - 지방농업기술진흥원 중심 지방 연구단체의 농업 및 주류관련 연구 - 국립 야마나시대학의 와인과학 연구센터에서의 와인과 포도학에 관한 연구활발
영국	Heriot watt 대학 [IB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주, 종류주관련 brew, distiller, 산업체에 대한 교육 및 연구활동 - 양조권위지인 The Journal of the Institut of Brewing(JIB)발행 -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지부를 설치 학술대회 개최

표 5d. 학술적 측면

구분	기관명	기관	학회지 또는 산업지명	국명
국외	EBC (European Brewery Convention)	학회	EBC	EU
	MBAA (Master Brewers Association of the Americans)	학회	MBAA	미국
	ASBC (American Society of Brewing Chemists)	학회	ASBC	미국
	IBD (The Institute of Brewing & Distilling)	연구소	Journal of the Institute of Brewing	영국
	VLB (Versuchs und Lehranstalt fuer Brauerei), TU Berlin	대학	Bierforum	독일
	TU Muenchen, Weihenstephan	대학	Weihenstephaner, Brauwelt	독일
	MEBAK (Mitteleuropaische brauanalytische Kommitte)	협회	MEBAK(도서)	EU
	Research Center Geisenheim	연구소	Geisenheim Alumi	독일
	日本農藝化學會	학회	BBB	일본
	日本生物工學會	학회	JBB	일본
국내	ASEV Japan wine 學會	학회	Journal of ASEV Japan	일본
	日本釀造學會	학회		일본
	Deutsche Weinbauverbandes	학회	Der deutsche Weinbau	독일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구산업미생물학회)	학회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한국식품과학회	학회	Food science & biotechnology	

표 5e. 협회 측면

주종	명칭	설립 년도	설립목적	조직 및 역할
맥주	독일 맥주 협회	1871	- 맥주산업 관련 회원사간의 공동관심사 증진 - 기술적 경험 및 산업적 정보교환 - 독일맥주 우수성 홍보	- 전국7개 지역별 맥주협회들로 구성 - 맥주산업 육성지원 - 회원사 상호간 협조조정 및 대정부 건의 - 학술적연구 프로젝트 공동수행
포도주, 발포성 포도주 및 강화 와인	독일 포도주 협회	1951	- 포도양조학 및 산업증진 - 포도주분야 신진 인력 개발 및 교육 - 회원간의 정보교류를 위한 정기적 세미나와 워크샵 개최	- 와인산업관련 단체와의 공동활동 - 정기적인 산업시찰 및 견학프로그램 가동 - 포도양조학관련 새로운 연구테마 발굴 및 연구자금지원
	독일 포도재배 협회	1874	- 회원사의 포도재배 기술 보급 - 독일와인 판매증진 - 신진 영농 인력양성	- 각 지방별 연합회구성,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 - 포도양조관련 국내외 연구활동 지원 - 회원사의 이익증진을 위한 국내외 로비활동 - 산업체와 지자체는 스폰서 역할
	Geisenheim 협회	1894	- 포도양조관련 연구, 교육 및 실무적 정보교환 - 포도양조분야 인력양성	- Geisenheim 출신 학생, 교수 및 관련 산업체들로 구성 - Geisenheim 연구소 및 Wiesbaden 대학과 공동 연구체제 구축
증류주	독일 증류주 협회	1974	- 알코올과 국민 건강 관련 정책 수립 - 증류주관련 양조기술 및 인력양성 - 회원사간 공동관심사 증진	- 국내외 증류주시장 분석 및 정보 제공 - 전전한 음주문화 및 알코올문제 연구 - 증류주 판매증진을 위한 국내외적 로비활동

표 5f. 지역축제 연계사례

국명	주종	사례	특징
독일	맥주	옥토버페스트	- 기원은 1810 황태자 루드비히와 테레사 공주와의 결혼식을 축복했던 축하행사에서 비롯된 세계 3대 축제중 하나 - 바이에른 지방의 주요 맥주회사들의 옥토버페스트용 맥주 제조 판매 - 바이에른 전통 민속공연등 다채로운 행사 개최 - 2주간의 행사기간에 약 700만명의 국내외 방문객으로 인한 경제적, 고용적 효과와 더불어 독일 맥주의 세계화에 공헌 - 바이에른 지방만의 축제가 아닌 세계속의 축제로 승화시켜 맥주를 문화와 결합시켜 세계 각국으로 전파 - 문행시의 행정적 · 정책적 전폭적인 지원
일본	와인	토카치와인	- 1960년 일본 농립수산성은 새로운 농촌건설을 위해 지자체 가 나서줄 것을 권유 - 포도주를 관광산업과 연계한 것으로 연간60만명 방문 - 토카치(十勝) 와인>이 일본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와인임 - 자원 리사이클링을 통해 <토카치와인> 제조는 지역농업을 육성에 크게 기여 - 포도주양조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여러가지 복지사업에 환원, 학교급식비, 종합체육관건설비 · 예술문화진흥기금 조성에 충당 - 와인을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과 지역문화의 창조 일조, 지자체에 이익을 제공하고 새로운 와인문화 전파

보르도협회, 위스키협회 등을 지원하여 수출을 장려하고 있다. 국내에도 주류관련 민속주관련 협회가 결성되어 있으나 활동이 미비하며 산학관 협동체제를 갖추지 못하여 주류업계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 주류관련 학술기관으로서 한국양조과학회가 최근 산학연관 협동으로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음은 늦은 감은 있으나 주류산업발전을 위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국내주류시장과 산업은 FTA시대를 맞아 기존의 폐쇄적이고 소모적인 대결구조를 버리고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어야하며 주류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산학연 공동 연구시스템과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본과 독일의 사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국의 주류홍보와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주류관련 지역축제를 문화컨텐츠와 연결하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다.

IV. 국내 주류산업의 문제점 및 대안

가. 정책 및 제도부문

국내 주류산업 정책과 제도는 그 동안 규제정비와 개선을 통하여 주류 산업발전에 기여하여 온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형 주류 산업육성과는 아직도 거리가 있음을 실감케 한다. 예컨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제보전 및 정세편의를 위한 규제위주의 주류산업관리 정책으로 인해

대기업위주의 주류산업구조가 고착화되었으며 그로인해 농민민속주산업 및 영세업체의 발전저해를 초래한 면이 있다. 특히 주류산업과 국내 농산물 소비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FTA 시대를 맞아 국내 주류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류산업 육성과 국내 농업의 연계강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규제정비와 산업정책적 차원의 지원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영국과 같이 중립기구인 주류 감독위원회에 행정권을 포괄적으로 부여 주류산업관련 전반적인 관리행정체계를 개선하고 고부가가치의 산업으로 육성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또한 시설기준이나 규격기준 및 제조방법 등에 대한 규제를 주종에 따라 완화하여 고품질의 다양한 주류상품이 개발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특히 농민주와 민속주에 대해서는 주종에 관계없이 차등과세나 면세를 적용해 소규모 영세업체를 제도적으로 보호육성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을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민주 및 민속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 지원과 품질인증제 등의 도입이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나. 연구 및 교육부문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선진국들은 일찍이 주류분야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대학 및 공공기관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 및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여 오늘날 주류분야의

발전을 이루하였으나 국내에서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류연구 및 전문가 육성에 소홀히하여 현재 국내에는 주류 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이다. 독일의 경우 베를린공대와 문헨공대가 경쟁과 협력을 바탕으로 맥주관련 연구와 인력양성을 통해 맥주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언급한 바와같이 미국의 캘리포니아 와인이 전통 와인 강국인 유럽의 와인을 능가하는 고품질의 다양한 와인을 생산하게된 계기는 바로 U.C. Davis대학의 와인 연구와 인재양성에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미국을 비롯 항후 EU 및 중국과의 FTA 체결이 눈앞에 와있는 상황에서 국내 농산물시장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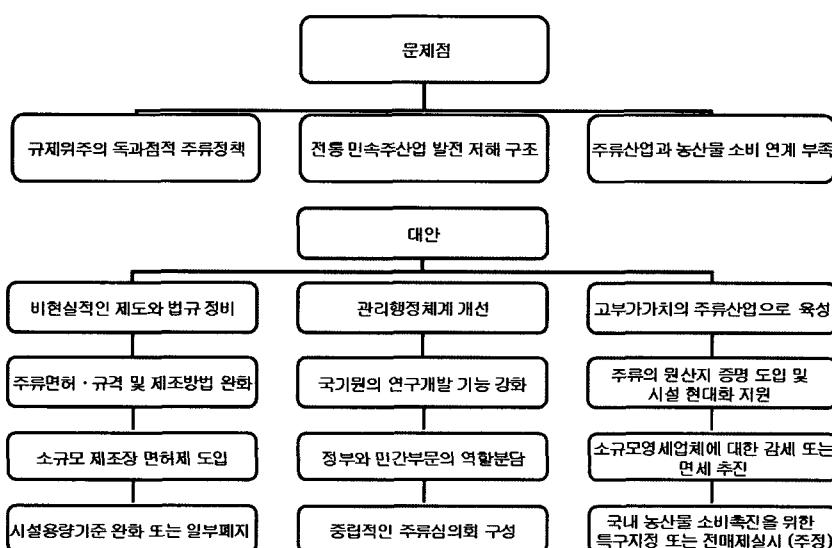


그림 2. 국내 주류산업의 문제점 및 대안 (정책 및 제도 부문).

제 스스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어야하며 그 대안이 바로 국내 농산물의 주류산업화라 할 수 있다. 이웃 일본은 이미 자국의 전체 쌀 소비의 30% 이상을 청주제조를 통해 소비하고 있어 잉여 쌀 소비 및 주류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류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 뿐아니라 주류 관련 교육기관 구축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는 고품질의 주류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주류관련 전문 기관의 설립을 육성하고 주류관련 정보 및 기술교류가 원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다. 유통 및 마케팅 부문

국내 주류 유통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대기업 위주의 유통채널 구조를 가지고 있어 특히 소규모 영세업체나 민속농민주의 경우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어 유통관련 제도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와인판매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간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여 와인판매 증대를 꾀하고 있고 각 지자체별 와인 시음회 및 품평회 등을 개최 주류제조자간 기술정보 교류를 촉진하고 주질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해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옥토버페스트나 일본의 토카치와인의 사례에서 보듯 주류관련 마케팅을 지역 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우리 술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자간 공동 브랜드, 공동마케팅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독일, 미국의 경우에서처럼 소규모 주류제조장에는 별도의 면허없이 영업장내에서 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양조주점을 허용하여 국내 민속농민주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현재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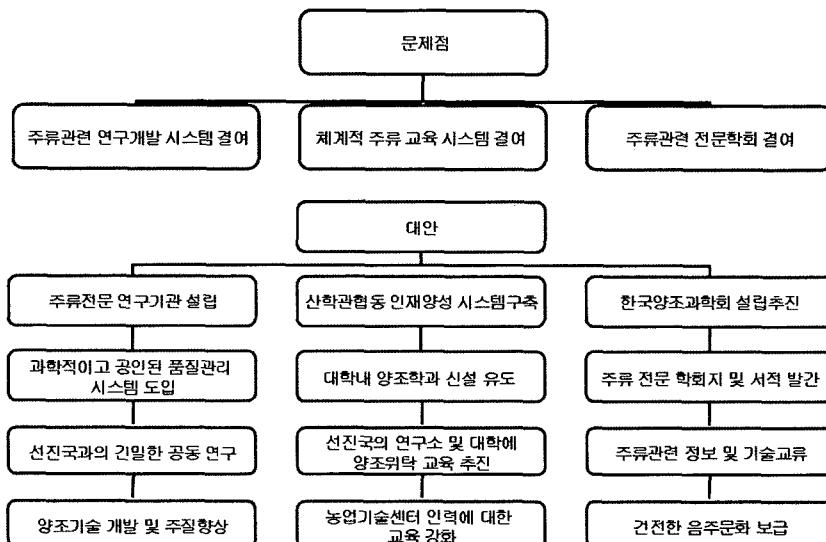


그림 3. 국내 주류산업의 문제점 및 대안 (연구 및 교육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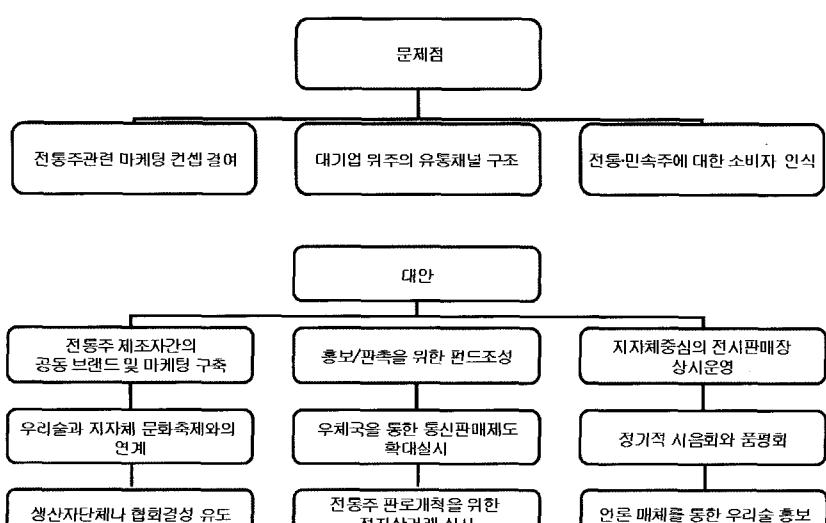


그림 4. 국내 주류산업의 문제점 및 대안 (유통 및 마케팅 부문).

시되고 있는 통신판매 허용 물량도 확대하여 민속농민주와 소규모 지역 특산주 등의 판로 문제를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에 전력하여 소비자들의 농민민족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할 것이다. 그리고 2002년 국내 소규모 맥주업이 허가된 이래 외부판매가 금지된 소규모 맥주업자의 경

우도 외부판매를 품질인증제 도입을 전제로 허가하여 업체간 건전한 품질경쟁을 통해 다양한 맥주가 출현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V. 결 론

칠레와 미국과의 FTA 체결을 필두로 우리나라에는 향후 EU 국가 및 중국과의 FTA 체결협상을 준비하려하고 있다. 이제 국내 산업은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로 본격 돌입하게 되었고 세계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특히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상실에 따른 농촌경제 붕괴가 우려된다. 이러한 국내 현실 타개책으로서 선진국의 주류산업제도와 육성정책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 농산물 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미 살펴본 바와같이 선진국의 경우 주류산업 육성발전에 국가 뿐 아니라 학계, 산업계 등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해 왔으며 특히 주류산업육성이 자국의 농산물소비 및 농가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합리적 주류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물론 국내 주류 산업구조와 농산물 시장 및 소비상황은 선진국의 상황과는 다르며 선진국과 같은 주류제도 정착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하고 선진국의 모든 주류관련 제도와 정책이 국내에 여과없이 적용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주류산업에 대한 특혜정책으로 인한 WTO와의 무역마찰등도 고려해야한다. 그러나 선진국의 주류 정책과 제도 그리고 시스템관련 사례를 분석해봄으로서 향후 국내 주류 육성정책 방향과 농산물 소비촉진 정책에 관한 밀그림은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자유무역체제하에 가장 취약 분야인 농산물 분야의 문제점을 일부나마 해소하는 방안으로 주류산업 육성을 통한 국내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키는 합리적 정책방안을 관련부처는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제 시대흐름에 맞는 주세 정책 및 제도를 구축하여 세계10대 경제대국의 위상에 걸맞고 FTA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주류육성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국내 주류산업육성과 농산물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제도정비와 더불어 체계적인 연구교육 시스템 및 인력양성 체제 구축이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술은 누구나 쉽게 제조가능하나 좋은 술은 과학적 이론을 토대로 한 연구와 경험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것을 선진국들의 명주에서 알 수 있다. 양조과학은 모든 이공계 계열의 학문이 총동원된 복합적 학문이며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우

리도 주류분야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집중 육성해야 하며 주류 선진국들과의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통해 뒤떨어진 국내 주류 연구기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주무부처 및 관련부처는 국내학술기관 및 연구 기관을 육성지원하고 특히 국내 농산물을 이용한 새로운 주류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농민민속주 업계는 정부의 일방적인 자금지원이나 제도적인 특혜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주류관련 협회나 단체들을 스스로 조직해 기술개발을 통한 품질향상이나 인력양성 등의 자국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하여 우리 농산물로 생산된 국산 주류제품이 국내 소비자 뿐아니라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더 나아가 수출의 길도 활짝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주류제품은 알코올음료로서 특성상 국민건강과 직결되므로 제한적인 소비와 건전한 음주문화정착이 유도되어야 하고 따라서 생산 유통판매에 대한 규제를 통해 알코올 남용을 적극 예방하여야한다. 한편으로는 세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하며 주류산업육성과 농산물소비가 연계되어야 한다. 주류산업육성이 FTA 체제하에 국내 농산물 보호육성과 경쟁력제고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관련부처, 학계, 산업계,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면 FTA에 따른 농업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grant from Institution Technology Development Program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참고문헌

1. 국세청, 주세법 (2006)
2. 대한주류공업협회, 주류통계자료 (2005)
3. 사단법인 한국마이크로브루어리협회자료
4. Deutsche Brauer-Bund e.V.
5. 서현수, 주세법의 이론과 실무 (2001)
6. 정현배, 외국의 농가 및 소규모 주류생산자 지원제도와 시사점 (2004)
7. Zoll, Biersteuergesetz (2006)
8. 이동필,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원구원(2002)